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91 발의연월일: 2020. 9. 28.

발 의 자: 천준호 · 민병덕 · 이동주

강병원 · 김용민 · 기동민

신동근ㆍ허 영ㆍ박홍근

김병기 · 고영인 · 이용선

오기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 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7조의2의 제목 중 "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"를 "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다)에서 건설 ·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다)에서 건설·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
- 2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(이하 이 조에서 "행정중심복합도시"라 한다) 중 투기과열지구(제63조제1 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)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 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

제57조의3의 제목 중 "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"를 "분양가상한제 적

용주택 등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)
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 인을 신청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 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제57조의2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) 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① 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주택 -----획법 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다) 에서 건설・공급하는 분양가상 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(상속 받은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"거주의 무자"라 한다)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이 하 "거주의무기간"이라 한다)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 주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외 체 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

으로 본다. 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⑧ (생 략) 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) ① ~ ④ (생략)

- 1. 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 획법 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 다)에서 건<u>설·공급하는 분양</u> 가상한제 적용주택
- 2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・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 중심복합도시(이하 이 조에서 "행정중심복합도시"라 한다) 중 투기과열지구(제63조제1항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 다)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 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 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 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57조의3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제57조의3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